

(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)
권리질권설정계약서

채권자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를 甲이라 하고, 채무자 주
식회사를 乙이라 하여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【대출약정】

乙은 20[]년 []월 []일자로 甲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
금 [사천만원]원(W[40,000,000]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
甲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수령하였다.

제 2 조 【권리질권의 설정】

乙은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,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부
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甲은 乙로부터 당해 채권증서를 교부받는다.

<근저당권부채권의 표시>

① 채권의 표시

- 채권자(근저당권자) :

주식회사

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

- 채무자(근저당권부채권의 채무자) : 진

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20-3 영광아파트

- 채권의 표시 : 20[]년 []월 []일자 대여금

- 채권금액 : 원금 금 [사천만원]원(W[40,000,000])

② 근저당권의 표시

- 부동산의 표시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20-3 영광아파트

- 순위번호 : 을구 변 20[]년 []월 []일 접수

제 변 근저당권

- 채권최고액 : 금 [오천이백만]원 (W[52,000,000])

제 3 조 【 변제충당 】

질권자는 저당물건이 경매 및 공매에 붙여지거나 또는 수용되었을 때 및 근저당권의 해지가 있었을 때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청구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
제 4 조 【 피담보채권의 범위 】

질권은 계약체결일 이후 乙의 甲에 대한 대출원리금(원본, 이자, 위약금, 관련 수수료, 질권 실행비용, 질물 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 기타 부수하는 채무 포함)채무를 담보한다.

제 5 조 【 질권설정등기 】

乙은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.

제 6 조 【 질권설정의 통지 】

乙은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제3조의 채무자(제3채무자) 및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 계약에 따른 질권설정의 확정일자부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甲과 乙 모두 서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을 보관한다.

20[]년 []월 []일

甲(채권자 겸 질권자)
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
주소:
대표이사:



乙(채무자 겸 질권설정자)

인)